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300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[redacted] 주식회사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7. 6. 8.
판 결 선 고	2017. 7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금속구조물, 창호 공사업, 토목,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. 5. 19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설립된 법인이다.

나. 원고는 2011. 12. 16. [redacted]대포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위 단지 내에 있는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공장용지 827.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및 위 지상 일반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제2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 147.27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하고,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취득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1. 12. 16. 피고에게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공장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, 피고로부터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.

라. 피고는 2016. 3. 18.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결과,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,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절차를 거쳐 2016. 9. 2.부터 2016. 9. 5.까지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및 재산세(가산세 포함, 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를 각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계 법령

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3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① 원고는 2011. 9. 8.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3. 3.경 이 사건 건물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는 하였으나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사건 건물에 생산설비를 그대로 보유하여 언제든지 다시 공장의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다.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일시적으로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, 이는 부수적인 용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.

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2014. 12. 31. 행정자치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상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알고도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를 취한 후 이제 와서 감면기준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원칙을 위반한 것이다.

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판단

1)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
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(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)하되,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한편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1. 9. 8. 신축하고 2011. 9. 9.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등록한 사실,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이고, 원고는 2011. 12. 15. 속초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핀 규정들에 비추어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

원고가 2011. 9. 8.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13. 3.경 이 사건 건물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 사실, 원고는 2014년경 및 2016년경 화성시 및 용인시에 각 공장을 설립하여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살피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,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장 용도로 신축한 2011. 9.경부터 2년 내인 2013. 3.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공장 가동을 중단하였고,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제조활동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.

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생산설비를 그대로 보유하여 언제든지 다시 공장의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공장 가동 중단이 일시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가 공장 가동을 중단한 시기인 2013. 3.경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조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속초시 이외 다른 지역에 공장 2곳을 새로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장으로 가동할 필요성도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.

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,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이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, 이 사건 건물을 제조활동이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를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.

3) 신뢰원칙 위반 여부

이 사건 건물의 현재 면적이 147.27㎡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위 면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기 위한 공장의 연면적 요건인 200㎡에 미달한다.

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면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공장 면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감면요건인 연면적 200㎡ 이상으로 증축할 것을 요구한 사실, 원고는 2016. 6. 24. 피고에게 공장증축계획서를 제출하였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나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공장을 증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살피건대, 원고는 2011. 12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당시부터 피고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감면요건인 연면적 200㎡ 이상으로 증축한 바 없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준 후 이 사건 각 처분 시까지 원고에게 공장 증축을 위한 계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(더구나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추징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)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창열

판사 김세욱

판사 현경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별지 1

과세처분목록

순번	처분일자	과세번호	세 목	합계
1	2016. 9. 2.	012941	취득세 4,321,640원, 지방교육세 400,810원, 농특세 216,070원	4,938,520원
2	2016. 9. 5.	000068	재산세 101,290원, 지방교육세 20,250원	121,540원
3	2016. 9. 5.	000067	재산세 103,090원, 지방교육세 20,610원	123,700원
4	2016. 9. 5.	000065	재산세 102,060원, 지방교육세 20,410원	122,470원
5	2015. 9. 5.	000064	재산세 103,610원, 지방교육세 20,720원	124,330원
6	2016. 9. 2.	012942	취득세 2,531,640원, 지방교육세 235,180원, 농특세 126,570원	2,893,390원
7	2016. 9. 5.	000082	재산세 100,700원, 지방교육세 20,130원	120,830원
8	2016. 9. 5.	000081	재산세 100,700원, 지방교육세 20,130원	120,830원
9	2016. 9. 5.	000080	재산세 106,720원, 지방교육세 21,340원	128,060원
10	2016. 9. 5.	000079	재산세 110,090원, 지방교육세 22,010원	132,100원
	과세 총액			8,825,770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별지 2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

③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·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(이하 "산업용 건축물등"이라 한다)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(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
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

④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치지역 및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(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,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(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)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(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,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2011. 12. 31.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1

제29조(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)
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장·지식산업·문화산업·정보통신산업·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·연구·정보처리·유통시설용 건축물

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(2012. 6. 1.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공장"이란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.

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2014. 1. 21.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공장"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,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·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(이하 "제조시설등"이라 한다)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2014. 12. 31. 행정자치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6조(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)
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(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)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. 끝.